



(:)

[2017.1.2.] [217 , 2017.1.2.,]

() 044 - 200 - 5852, 5851

(-) 044 - 200 - 5780, 5777

1

1 () 「 」

2 () 「 」 (" ") 2 2 " " 「 」 2 5

. < 2008.3.14., 2009.12.14., 2013.3.24.>

- 1.
2. , 가
3. 「 」 6 가

3 (.) 6 3 . () ,

가 . . . < 2008.3.14., 2013.3.24.>

1 (" ") , 8 (" ") 7 23 (") .

6 5 가 1 .

2

4 () 7 1 " "

2 . < 2008.3.14., 2013.3.24.>

7 2 2

7 3 4 " 1 " . <

2008.3.14., 2013.3.24.>

- 1.
2. 10 1 (" " ")
3. 36 (" ")
- 4.
5. .
6. ,

7.

가.

8.

9.

5 () 8 1 " "

2 . < 2008.3.14., 2013.3.24.>

8 2 4 " " .<

2008.3.14., 2013.3.24.>

1.

2.

3.

4. . . . 15 1 (" "

") .

5.

6.

7.

8.

6 (가) 9 1 가(" 가"

) 9 2 2 가 .

1 가 가가 .

1.

2.

3.

4. 가

5. (船用品)

6.

7.

8.

9.

9 3 가 가

가

7 () 10 2 1

1.

, 가

가. , 가
 . 가
 . , 가
 . 가 ()
 . 가

- 2.
- 3. 3
- 4.
- 5. .
- 6.
- 7. 17 1 (" ")
- 8. .
- 9. 35 1 (" ") .
- 10.

8 () 10 3 " "
 7 1 3 , 7 9 . < [2008.3.14., 2013.3.24.](#)>

9 () 10 3
 3 .
 . < [2008.3.14.](#)>

- 1. 가. 가 1
 . 2
- 2. 가. 2
 . 1
 1 가 . , 가 .
 1 가 .

10 () 11 1 2 3
 .
 1. : 3
 2. : 2 1
 11 2 " " .<
[2008.3.14., 2013.3.24.](#)>

1. 가

2. 가

3.

4. 가

11 3 " 가 " 가
. < 2008.3.14., 2013.3.24. >

1.

2.

3. 가

가

11 ("), 2 (" ") 11 1 (" 3
(" ") 3 .
11 4
4 . . .

. < 2008.3.14. >

1. :

2. :

3. : 가

() . , . . .
. <

2008.3.14. >

2

. < 2008.3.14. >

2 가 , 가
가

< 2008.3.14. >

12 () 12 1 3 5

, 6 . 1
12 2

1.

2.

3.

4.

1

7

. < 2008.3.14. >

1.

가.

가

3

2.

가.

3

13 (

가 (" ") 6 3

13 2 「

8

. < 2008.3.14.>

1

13 2

2008.3.14.>

2

. < 2008.3.14.>

14 (

) 14

"

"

. < 2008.3.14., 2013.3.24., 2013.6.24.>

1.

13 1 6 1 • 2

「

가

8 12

18 1

2.

1

3.

1

15 (

)

15 2

9

1.

39

2.

3.

4.

5.

6.

가

7.

15 2

가

•

가

15 1

3

16 (")) 16 1 (")
 ") 10
 「 」 36 1
 「 」 8 2
 . < 2008.3.14., 2011.4.11., 2012.1.6. >

1. <2011.4.11.>

2. 「 」 13 2

3. 「 」 49 1

4. 12 1

5. (가)
 1

10

. < 2008.3.14., 2013.6.24. >

1.

가.

3

2.

가.

16 3

7

가

. < 2008.3.14. >

16 4

11

17 () 17 2

(" ")

. < 2008.3.14., 2013.3.24. >

1.

2.

3.

가

17 6

. < 2008.3.14.,

2009.6.26., 2013.3.24., 2013.6.24. >

1.

가.

가

- (1)
- (2)
- (3)
- (4)
- (5)
- (6)
- (7)
- (8)

(針路)

2.

가.

(船橋)

1

17

6

3 2

. < [2013.6.24.](#) >

18 (

)

18

1

(

"

"

)

1.

2. 2 1

200

, 2 2

100

18

2

. < [2009.6.26.](#), [2013.6.24.](#) >

1.

가.

:

(1)

(2)

(3) (船樓)

(4)

2.

가.

:

가

.

:

,

가

19 (

)

19 2

"

가

"

. < [2008.3.14.](#), [2013.3.24.](#) >

1.

39

1

(

"

"

)

(

"

"

)가

39

2

5

.

2.

,

3.

4.

- 5. 19 4 (" ") ,
- 6. 가
- 7. 가
- 1 가 19 1
(" ") .< 2008.3.14.>
- 20 () 19 4 . < 2008.3.14.>
- 1. , , , , ,
- 2.
- 3.
- 4. 10
- 5. 19 4 " 가 " .< 2008.3.14., 2013.3.24.>
- 1.
- 2. 가
- 3. 24
- 4. 19 5 () , (" ") . .< 2008.3.14., 2013.3.24., 2014.11.19.>
- 19 8 " " .< 2008.3.14., 2013.3.24.>
- 1. . . .
- 2. 19 3 . 6
- 3.
- 4.
- 5.
- 6. 가 가
- 7.
- 21 () 19 12 " " .< 2008.3.14.>
- 1. : 19 1 1 4 7
- 2. : 19 1 4 5
- 3. : 19 1 1 3 7 .

4. : 19 1 2 7

5. : 19 1 2 4 7

6. : 19 1 5 6

22 () 19 12

23 () 12 19 9

「 」 36 1
「 」 8 2

. < 2008.3.14., 2011.4.11.>

1. <2011.4.11.>

2. 1

1 13

24 () 20 2

. < 2008.3.14., 2013.3.24., 2014.12.31.>

1. 1

2.

3.

20 2

() . < 2014.12.31.>

25 () 21 1

21 2

15 14

26 () 22

5

(" ")

1 가

1

1. 가

2.

3.

4.
5.

1 1 3 가

3

27 () 23 1 "
" 2 . < 2008.3.14., 2013.3.24. >
23 2

16 2 .

23 3 4 " " .<
2008.3.14., 2013.3.24. >

1. 24 가(" 가")
2. , 25 ("
3. ") . .
4. 27 1 (" ") .
5. 30 (" ") .
6. 31 . . .
7. 32
8. 39 2
9. 가
10. .
- 11.

28 (가) 24 4 가 가

1. .
2. ,
3. 24 4 가 가
가 .< 2008.3.14. > 가

< 2008.3.14. >

1. 가
2. 가
- 3.

29 () 25 2 1

- 1.
- 2.
- 3.
4. 3
- 5.
- 6.
7. 32
- 8.
- 9.
10. 가
- 11.
- 12.
- 13.

33 1 3

, 2 가 ,

1 2

30 () 25 3 " . < [2013.3.24.](#)>

- 1.
- 2.

[[2009.6.26.](#)]

31 () 25 3 . < [2008.3.14.](#)>

1. 2
2. 1 ()

1 1 , 1 , . < [2008.3.14., 2013.3.24.](#)>

32 () 26 1 1 3 (")

1. : 3
 2. : 3
 3. : 1 3
- 3

26 2 " 가 " 가
. < 2008.3.14., 2013.3.24. >

- 1.
2. 가

3. 가
25 3

33 () 26 1
18 . .
. < 2008.3.14. >

. < 2008.3.14. >

- 1.
2.
3. .
26 2 (" ")
. . (")

. < 2008.3.14. >

34 () 27 1 19 .
27 2
1 . < 2008.3.14. >

- 1.
2.
3.
4.

35 () 10 2
20
. < 2008.3.14. >

1
28 2 . <
2008.3.14. >

2
. < 2008.3.14. >

36 () 29 " "
. < 2008.3.14., 2013.3.24. >

- 1.
2.
3. 가 가

37 () 30 2 21

1. 39 .
- 2.
- 3.
- 4.
5. 가

30 1 2 , ,
3

38 (.) 31 2 .
4 .

39 () 32 1 3 가

- 1.
- 2.

32 2 3 가 .

- 1.
- 2.
- 3.

1 2 22

40 () 33 1 3 " " .
. < [2008.3.14., 2013.3.24.](#) >

1. , , , ,
2. , , ,
3. , , , ,
4. , , ,
5. ,
6. . . .
7. , , , , , , ,

8. ,
9. 1 8

33 1 4 " "

가 . < [2008.3.14., 2013.3.24.](#) >

1. 1 6 8

2. 1 . , ,

4

41 () 34 2 5 " "

. < [2008.3.14.](#), [2013.3.24.](#), [2013.6.24.](#) >

1. 가 가 가

2.

3. 가 3 1

42 () 35 2 " "

. < [2008.3.14.](#), [2013.3.24.](#) >

1.

2. 가

3.

43 () 35 3 23 ,

가

1

5

44 (.) 36 2

1.

2.

3.

4.

2

가

45 () 37 5 .

46 () 38 1 4 (" ")

. < [2013.6.24.](#) >

1.

2. 5

10

3. 11 . 9 , , ,

1

4.

5. 4 ()

47 () 24

36 1 ()
< 2008.3.14., 2011.4.11., 2013.3.24.>

- 1.
- 2.
- 3.
4. 46
- 1 3

- 1.
2. .
3. .
- 4.
- 5.

25 1 .< 2008.3.14., 2013.3.24.>

48 () 38 1
6

1
< 2008.3.14., 2013.3.24.>

49 (.) 47 3 10
. < 2008.3.14., 2013.3.24.>

50 () 39 3

- 1.
- 2.
3. ,
- 4.
5. ,
- 6.

1 .<
2008.3.14.>

- 1.
2. .
- 2 1 . .

.< 2008.3.14.,
2013.3.24.>

39 4

.< 2008.3.14., 2013.3.24.>

- 1. , ,
- 2. 39 5 4 1 3
- .
- 39 5

- 1.
- 2. 가 가 가
- 3. 가 가
- 4.
- 5.
- 6.
- 7.
- 8.
- 9.
- 10.

가 6 . 3 , 4 6 .

51 () 40 1 26

「 」 36 1 ()
 . < [2008.3.14., 2011.4.11., 2013.3.24.](#) >

- 1. ()
- 2. 14
- 3.

27 1 .< [2008.3.14., 2013.3.24.](#) >

52 () 40 5
 6 .

53 (•) 51 2 10
 . < [2008.3.14., 2013.3.24.](#) >

54 () 41 6 가 가
 가 . < [2008.3.14., 2013.3.24.](#) >

- 1. ,
- 2.
- 3.

54 2() 42 2 1 1
 (" ")
 1 4 30 28 ()
 1. ()
 2. ()
 3. ()
 4.
 5. ()
 6.
 1 () 42
 3 30

[[2010.10.22.](#)]

55 () 43 1
 7
 56 () 3 ()
 3)
 1. 26 : 2017 1 1
 2. 27 : 2017 1 1
 3. 33 : 2017 1 1
 4. 35 : 2017 1 1
 5. 37 : 2017 1 1
 6. 38 4 : 2017 1 1
 7. 40 : 2017 1 1
 8. 51 : 2017 1 1

[[2017.1.2.](#)]

< 411 ,2008.2.15.>

< 4 ,2008.3.14.>

< 96 ,2009.2.6.>

1 ()

2 ()

6

< 141 ,2009.6.26.>

1 ()

< 187 ,2009.12.14.>

1 ()

2 4

5 ()

2 " 「 」 2 6 " " 「 」 2 5 " .

6

< 301 ,2010.10.22.>

1 ()

2 () 54 2 1

2010 12 31

< 350 ,2011.4.11.>

< 434 ,2012.1.6.>

1 ()

2 5

5 ()

16 1 3 " 「 」 13 1 " " 「 」 49 1 " .
10 1 " 「 」 13 1 " " 「 」 49

1 " .

6

< 1 ,2013.3.24.>

1 () .

2 4

5 ()

2 , 4 1 , 3 , 5 1 , 2 ,

8 , 10 2 , 3 , 14 , 19 1

, 20 2 , 4 , 27 1 , 3

, 30 , 32 2 , 36 , 40 1

, 2 , 41 42 " "

" "

2 3 , 3 1 , 4 3 8 , 5 2 7 , 10 3 3 , 17 1 ,

2 1 , 20 3 , 24 , 3 , 31 2 , 47 1

• , 3 , 48 2 , 49 , 50 3 , 4

, 51 1 • , 2 , 53 , 54 , 24

, 25 , 26 , 27 28 "

" " " .

2 3 " " "

" .

5 가 " " " " .

26 " " " " .

<63>

< 30 ,2013.6.24.>

1 () .

2 ()

16 2 2 가 .

3 ()

18 2 2 .

< 63 ,2013.12.30.>

2014 1 1 .

< 110 ,2014.11.19.>

1 ()

2 ()

20 3

" " " " .

< 127 ,2014.12.31.>

< 128 ,2014.12.31.>

1 ()

2 () 24 1 1

< 199 ,2016.9.1.>

< 217 ,2017.1.2.>

1 ()

2

[별표 1] <개정 2013.6.24>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제3조제3항 관련)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국제항해선박 소유자 조치 사항 | 보안 1등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출입구별로 당직자를 배치하거나 폐쇄하여 무단출입을 방지할 것 2.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것 3.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의 소지품을 검색하고 무기류는 선내 반입을 금지할 것 4. 국제항해선박 내 보안이 필요한 구역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선박보안책임자의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할 것 5. 국제항해선박 주위와 선박 내의 제한구역을 주기적으로 감시할 것 6. 국제항해선박에 선적되는 화물과 선용품을 검색할 것 7.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 1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 |
| | 보안 2등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보안 1등급 시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2.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출입구를 2분의 1 이상 폐쇄할 것 3. 해상을 통하여 국제항해선박에 접근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접근하는 자나 선박 등에 경고 등의 조치를 할 것 4.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에 대하여 검색대를 설치하여 검색할 것 5. 제한구역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상시 순찰할 것 6. 국제항해선박에 선적되는 화물 및 선용품에 대하여 금속탐지기 등으로 정밀검색을 할 것 7.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 2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 |
| | 보안 3등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보안 2등급 시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2. 선박출입구를 하나로 제한하고 보안상 필요한 자에게만 승선을 허락할 것 3. 국제항해선박에 화물이나 선용품 선적을 중단할 것 4. 국제항해선박 전체를 수색할 것 5. 국제항해선박의 모든 조명장치를 점등할 것 6. 국제항해선박(여객선에 한정한다)에 위탁 수하물의 선적을 금지할 것 7.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국제항해선박에 |

| | | |
|-----------------------------|-----------|--|
| | | <p>대하여 보안 3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인원이나 차량에 대한 일상적인 보안검색, 경계 및 무단출입 방지 업무를 수행할 것 2. 허락받지 아니한 인원과 무기류의 항만시설 반입을 금지할 것 3. 항만시설 내에 보안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제한구역은 허가받은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것 4. 화물과 선용품의 반입·반출, 항만시설 내 이동, 보관 및 처리 과정에서 보안상 위협을 초래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감시할 것 5. 항만시설 보안업무 담당자 간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통신보안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것 6.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탑승하는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할 것 7.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 1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 |
| 항만 시설 소유자 조치 사항 | 보안 1등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1등급 시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2. 항만시설을 순찰하는 인원을 평상시보다 늘려 배치할 것 3. 항만시설 출입구 2분의 1 이상을 폐쇄할 것 4. 출입자, 출입차량 및 출입자 소지품의 검색 비율을 높여 검색할 것 5. 해상에서의 보안강화를 위하여 순찰선을 운항시킬 것 6. 항만시설에 대한 감시 장비를 계속적으로 운용하고 운용기록은 상시 유지할 것 7. 항만시설 출입구에 철제차단기 등 접근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8. 정박한 선박 주위에 차량의 주차를 통제할 것 9.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탑승하는 여객의 위탁수하물을 금속탐지기 등으로 정밀검색할 것 10.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 2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 |
| | 보안 2등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2등급 시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2.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 지정한 항만시설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것 3.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 지정한 항만시설에서 화물이동 및 차량이동을 중지시킬 것 4.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 지정한 항만시설의 운영을 중지할 것 5.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 지정한 항만시설에서 대피 조치를 할 것 6.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에 대한 검색을 할 것 7. 항만시설 내 위험물질의 보호 조치 및 통제를 할 것 8. 항만시설 내 선용품의 인도를 중지할 것 9. 위탁 수하물의 취급을 금지할 것 10.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 3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 |
| | 보안 3등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3등급 시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2.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 지정한 항만시설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것 3.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 지정한 항만시설에서 화물이동 및 차량이동을 중지시킬 것 4.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 지정한 항만시설의 운영을 중지할 것 5.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 지정한 항만시설에서 대피 조치를 할 것 6.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에 대한 검색을 할 것 7. 항만시설 내 위험물질의 보호 조치 및 통제를 할 것 8. 항만시설 내 선용품의 인도를 중지할 것 9. 위탁 수하물의 취급을 금지할 것 10.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 3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 |

비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보안사고 예방 이나 그 밖의 보안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보안등급 별 조치사항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다른 보안등급의 조치사항 일부를 적용하도록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즉시 그 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3.3.24>

총괄보안책임자 · 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 관련)

| 구 분 | 선 박 | | 항만시설 |
|----------------|---|--|--|
| | 총괄보안책임자 | 선박보안책임자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
| 경력 요건 |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거나 국제항해선박 승무경력,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해양수산업 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항해선박 승선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해양수산업 관련 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p>「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으로서의 승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p> | <p>항만시설 운영에 종사한 경력 또는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p> |
| 전문 지식 요건 | <p>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제50조제6항 각 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는 선박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됨)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교육을 18시간 이상 받은 자</p> | <p>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제50조제6항 각 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는 선박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됨)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교육을 12시간 이상 받은 자</p> | <p>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제50조제6항 각 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는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됨)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자</p> |

[별표 3]

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제11조제1항 관련)

| 보안심사 종류 | 보안심사 세부내용 |
|-------------------------------|---|
| 최초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 및 갱신보안심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인된 선박보안계획서의 비치 여부 2.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선박 보안활동의 기록 여부 3. 보안관리체제와 선박보안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정상운용 여부 |
| 임시선박보안심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보안평가의 실시 및 선박보안평가 결과를 선박보안계획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2.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절차 이행 및 시행 여부 3.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설치 및 작동 여부 4.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의 사무 수행 및 보안관리체제에 대한 숙지 여부 5. 내부보안심사를 포함하여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위한 준비상태 |
| 특별선박보안심사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특별보안심사의 원인이 된 사유 |

[별표 3의2] <개정 2016. 9. 1.>

해적위험해역의 범위 (제17조제3항 관련)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

| | |
|-----|-------------------------|
| A지점 | 남위 05도 00분, 동경 039도 00분 |
| B지점 | 남위 05도 00분, 동경 065도 00분 |
| C지점 | 북위 22도 00분, 동경 065도 00분 |
| D지점 | 북위 22도 00분, 동경 059도 40분 |
| E지점 | 북위 15도 00분, 동경 043도 00분 |
| F지점 | 북위 15도 00분, 동경 040도 00분 |

[별표 4] <개정 2009.6.26>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제38조 관련)

| 구분 | 세부 기준 |
|--------------------------|--|
| 경비·검색인력 | <p>1.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두 출입구에는 경비·검색인력으로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1명 이상 상시 배치한다.</p> <p>가. 부두의 주된 출입구</p> <p>나. 주된 출입구 외에 사람과 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그 밖의 출입구</p> <p>2.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외의 항만시설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1호의 경비·검색인력을 배치한다.</p> <p>가. 야간에 국제항해선박의 이용이 없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의한 감시·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주간에만 배치</p> <p>나. 국제항해선박의 이용이 연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경비·검색인력을 상시 배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이 계류 중일 때에만 배치</p> <p>3. 국제항해여객선이 취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경비·검색인력 외에 그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항수속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3명 이상의 검색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p> |
| 보안시설 (외곽 울타리·담 또는 장벽) | <p>1.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 담 또는 장벽(이하 이 표에서 "울타리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p> <p>가. 높이는 2.7m 이상으로 할 것</p> <p>나. 울타리등의 하단과 지면의 간격은 50mm(배수시설의 설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200mm) 이하로 할 것</p> <p>다. 울타리등의 상단에는 윤형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할 것</p> <p>라. 울타리등의 지주는 지하 900mm 이상 깊이로 묻을 것(지하 시설 또는 암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400mm 이상의 깊이로 묻고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할 것)</p> |

| | |
|---------------------------------|---|
| | <p>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낭떠러지 등 자연의 방어벽, 안벽 등 계류시설 또는 다른 항만시설과 인접하여 울타리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p> <p>3. 항만친수시설, 도심과 인접한 지역 및 관광지 등의 경우 항만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1호다목에 따른 유행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 <p>보안시설 (조명시설)</p> | <p>1. 항만시설(육상구역에만 해당한다)의 출입구, 선박계류지역, 야적장 및 울타리등에는 지면과 같은 높이에서 2럭스(Lux)이상의 조도가 유지되도록 조명등(보안등)을 설치한다.</p> <p>2. 조명등(보안등)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상시 조명되도록 하되, 야간출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조명등을 켜지 아니할 수 있다.</p> |
| <p>보안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p> | <p>1. 다음 각 목의 지역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가. 국제여객터미널의 여객 대기지역 나.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하는 울타리등</p> <p>2. 제1호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때에는 감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녹화기록은 10일 이상 보관한다.</p> |
| <p>보안장비 (금속탐지기, 검색경)</p> | <p>1. 부두의 주된 출입구와 그 밖에 상시 출입이 이루어지는 출입구에는 대인 검색용 문형 또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1대 이상 갖추어 둔다.</p> <p>2. 부두의 차량 출입구에는 검색경 등 차량 하부 검색장비를 1대 이상 갖추어 두거나 설치한다.</p> |
| <p>보안장비 (철침판, 방지턱, 차단기)</p> | <p>부두의 주된 출입구에는 차량의 무단 진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장애물을 설치·운영한다.</p> <p>1. 철침판 또는 차량돌진 방지턱 1개 이상</p> <p>2. 차량 통과를 차단할 수 있는 철제차단기(Barricade) 1개 이상</p> <p>3. 그 밖에 모래, 화분대 등 미관을 고려한 장애물 1개 이상</p> |
| <p>보안장비 (통신장비)</p> | <p>근무 중 경비·검색인력 간 또는 항만시설소유자 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 간에 비상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보유한다.</p> |

[별표 5] <개정 2013.3.24>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제45조 관련)

| 구 분 | | 자 격 기 준 |
|----------|----------|---|
| 심사경력 | | 최초보안심사·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에 1회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
| 기본 자격 | 기본 경력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자 가. 해양수산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선박의 항해, 기관 또는 운항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항해 선박에서 2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선박의 안전 또는 보안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가목과 나목의 합산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교육 경력 |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모두 받은 자 가.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의 내용: 7시간 나.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이행과 승인요령: 7시간 다. 선박보안평가와 선박보안심사 요령: 7시간 라. 선박 및 항만 보안시설·설비의 운용·관리: 4시간 마. 선박보안 일반: 3시간 |

비 고

1. 보안심사관은 3년 단위로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을 포함한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최초보안심사·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여 보안심사경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보안심사경력을 유지하지 못한 보안심사관은 교육 경력란의 교육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육은 각 2시간 이상, 라목 및 마목의 교육은 각각 1시간 이상, 총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3년 이내에 최초보안심사·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 중 어느 하나 보안심사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별표 6] <개정 2009.2.6>

보안심사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선박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가. 보안심사대행기관의 경우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38조 제2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 - | |
|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38조 제2항제2호 | 가) 등록요건 중 일부가 미달하게 된 경우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
| | | 나) 등록요건의 전부가 미달하게 된 경우 | 업무 정지 1개월 | 지정 취소 | - | - |

| | | | | | |
|---|---------------|-----------|-----------|-----------|-------|
|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 법 제38조 제2항제3호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4)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38조 제2항제4호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5)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38조 제2항제5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나. 보안교육기관의 경우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40조 제3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 | |
|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기준·교수인원 등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40조 제3항제2호 | 가) 지정요건의 시설 또는 교수가 부족한 경우 | 개선 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지정 취소 | - |
| | | 나) 지정요건 중 시설 또는 교수가 전혀 없는 경우 | 업무 정지 1개월 | 지정 취소 | - | - |
|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 법 제40조 제3항제3호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4)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40조 제3항제4호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5)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5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별표 7]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
(제55조 관련)

1. 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

| 구 분 | 선박의 종류 | 기본수수료 | 비 고 |
|---|--|---------|--|
|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 기본 수수료: 67,360원 ※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수수료의 경우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수수료의 2분의 1 감면 | | ○선박보안심사(최초 보안심사·갱신보안심사·중간보안심사)·임시선박보안심사·재심사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에 톤수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에는 해당 보안심사 종류별 수수료를 적용한다. |
| 최초보안심사·갱신보안심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67,360원 | |
| |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84,200원 | |
| 중간보안심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50,520원 | |
| |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67,360원 | |
| 임시선박보안심사 | 기본수수료: 50,520원 | | |
| 특별선박보안심사 | 없음 | | |
| ○ 선박종류에 따른 구분 - 제1군: 유조선·화학제품운반선·가스운반선·산적화물선·고속화물선 및 그 밖의 화물선 - 제2군: 여객선·고속여객선 및 이동식해양구조물 ○ 톤수계수 - 총톤수 500톤 미만: 0.8 - 총톤수 500톤 이상 1,600톤 미만: 0.9 - 총톤수 1,600톤 이상: 1 | | | |

비고

1. 공휴일 보안심사 및 국외 보안심사의 수수료

가. 공휴일에 하는 보안심사의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나. 국외에서의 선박보안심사·임시선박보안심사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한다.

2. 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보안심사자의 출장에 드는 실비를 별도로 부담한다.

2.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수수료

| 구 분 | 규 모 | 수 수수료 | | 비 고 |
|----------------------|--|----------------------------------|----------|-----|
|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 또는 변경승인 | 항만시설 1건당 | • 승인: 55,700원 • 변경승인: 27,850원 | | |
| 항만시설보안심사 | 대상 항만시설 면적 | 최초 · 갱신심사 | 중간심사 | |
| | 10,000m ² 미만 | 111,400원 | 55,700원 | |
| | 10,000m ² 이상 50,000m ² 미만 | 222,800원 | 111,400원 | |
| | 50,000m ² 이상 100,000m ² 미만 | 401,000원 | 200,500원 | |
| | 100,000m ² 이상 200,000m ² 미만 | 641,600원 | 320,800원 | |
| | 200,000m ² 이상 500,000m ² 미만 | 898,200원 | 449,100원 | |
| | 500,000m ² 이상 | 1,077,800원 | 538,900원 | |
| |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 없음 | | |

[별지 제2호서식]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제6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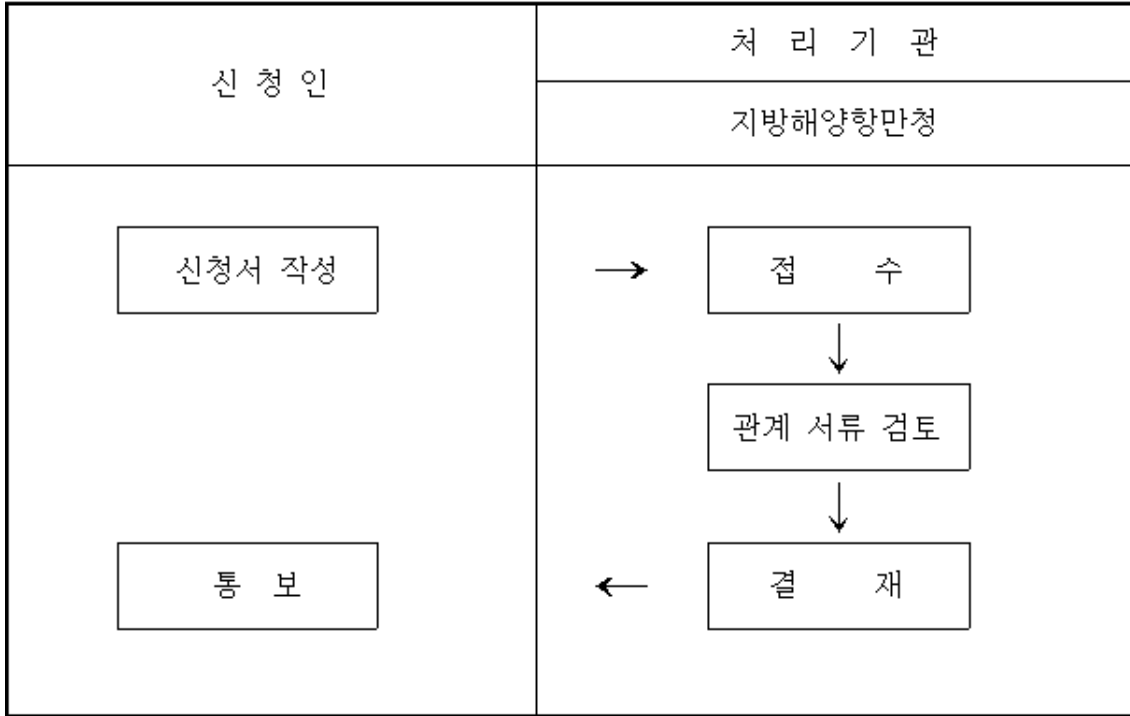
- 대상 선박명:
- 선박보안평가 일시 및 장소:
- 선박보안평가자:
-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비고 |
|--|------|----|
| 1. 출입제한구역의 설정 및 제한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 통제 | | |
| 2.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 마련 여부 | | |
| 3. 선박의 갑판구역과 선박 주변 육상구역에 대한 감시 대책 | | |
| 4. 국제항해선박에 근무하는 자와 승선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수하물에 대한 통제 방법 | | |
| 5. 화물의 하역절차 및 선용품의 인수절차 | | |
| 6. 국제항해선박의 통신·보안 장비와 정보의 관리 | | |
| 7.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 보안활동 | | |
| 8.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상 위협의 확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및 조치 | | |
| 9.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시설·장비·인력 및 보안의 취약요인 확인과 대응절차의 수립·시행 | | |
| 비고 1. 선박보안평가결과서는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가 함께 작성하여야 하며, 선박에서 한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요약하여 서술식(문장)으로 적습니다. 2. 선박보안평가결과서 작성을 위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6.26>

(제1쪽)



증서번호: 대한민국
Certificate No. :

Republic of Korea

국제선박보안증서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대형기관의 장)에 의해 발급되었습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 (ISPS Co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 선명(Name of ship):
- 선박번호(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선적항(Port of registry):
- 선박의 종류(Type of ship):
- 총톤수(Gross tonnage):
- 선박 식별번호(IMO Number):
- 안전관리회사(Name and address of the Company):
-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의 보안시스템 및 해당 보안장비가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 A편 제19.1절에 따라 심사되었음.

that the security system and any associated security equipment of the ship has been verifi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19.1 of part A of the ISPS Code;

2. 선박보안심사 결과 이 선박의 보안시스템 및 해당 보안장비가 모든 측면에서 만족스러우며 협약 XI-2장 및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 A편의 요건에 부합함.

that the verification showed that the security system and any associated security equipment of the ship is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ship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chapter XI-2 of the Convention and part A of the ISPS Code;

3. 이 선박은 승인된 선박보안계획서를 갖추고 있음.

that the ship is provided with an approved Ship Security Plan.

이 증서의 발행근거가 된 최초/갱신보안심사 일자:

Date of initial/renewal verification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 A편 제19.1.1절에 따른 보안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ver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section 9.1.1 of part A of the ISPS Code.

증서의 발행장소(Issued at):

발행일자(Date of issue):

심사자 서명(signature):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대형기관의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제3쪽)

CCertificate No.: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A편 제19.3.7.2절에 적합한 추가보안심사 (ADDITIONAL VERIFICA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A/19.3.7.2 OF THE ISPS CODE)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ISPS Code) A편 제19.3.7.2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보안심사에서 이 선박이 협약 XI-2장 및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dditional verification required by section 19.3.7.2 of part A of the ISPS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chapter XI-2 of the Convention and part A of the ISPS Code.

서명(Signed):

장소(Place):

일자(Date):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대형기관외 장)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A편 제19.3.3절이 적용되고 이 증서가 5년 미만의 기간동안 유효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표기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SECTION A/19.3.3 OF THE ISPS CODE APPLIES)

이 선박은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ISPS Code)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며 이 증서는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A편 제19.3.3절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t A of the ISPS Code, and the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section 19.3.3 of part A of the ISPS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Signed):

장소(Place):

일자(Date):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대형기관외 장)

갱신보안심사가 완료된 경우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A편 제19.3.4절에 따른 표기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VERIFICATION HAS BEEN COMPLIED AND SECTION A/19.3.4 OF THE ISPS CODE APPLIES)

이 선박은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ISPS Code)의 관련규정에 적합하며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A편 제19.3.4절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t A of the ISPS Code, and the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section 19.3.3 of part A of the ISPS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Signed):

장소(Place):

일자(Date):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대형기관외 장)

(제4쪽)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A편 제19.3.5절이 적용되는 보안심사를 위한 항구에 입항 때까지 또는 같은 규칙 A편 제19.3.6절이 적용되는 유예기간동안 이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표기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VERIFICATION WHERE SECTION A/19.3.5 OF THE ISPS CODE APPLIES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SECTION A/19.3.6 OF THE ISPS CODE APPLIES)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ISPS Code) A편 제19.3.5/19.3.6절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section 19.3.5/19.3.6 of part A of the ISPS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Signed):

장소(Place):

일자(Date)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대행기관의 장)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A편 제19.3.7.1절이 적용되어 만료일을 앞당기기 위한 표기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EXPIRY DATE WHERE SECTION A/19.3.7.1 OF THE ISPS CODE APPLIES)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ISPS Code) A편 제19.3.7.1절에 따라, 신규 만료일은 _____입니다.

In accordance with section 19.3.7.1 of part A of the ISPS Code, the new expiry date is _____

서명(Signed):

장소(Place):

일자(Date):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대행기관의 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6.26>

증서번호
Certificate No.: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INTERIM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대행기관의 장)에 의해 발급되었습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ISPS Co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선명(Name of ship):

선박번호(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Port of registry):

선박의 종류(Type of ship):

총톤수(Gross tonnage):

선박식별번호(IMO Number):

안전관리회사(Name and address of the Company):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이 증서는 연속적으로 발행된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입니까? 예/아니오

Is this a subsequent, consecutive interim certificate? Yes/No

만약 그렇다면, 최초의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발행일자를 적으십시오.

If Yes, date of issue of initial interim certificate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A편 제19.4.2절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requirements of section A/19.4.2 of the ISPS Code have been complied with.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A편 제19.4절에 따라 발급되었습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pursuant to section A/19.4 of the ISPS Code.

이 증서는 _____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증서의 발행장소(Issued at):

발행일자(Date of issue):

심사자 서명(signature):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대행기관의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구비서류

1.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가.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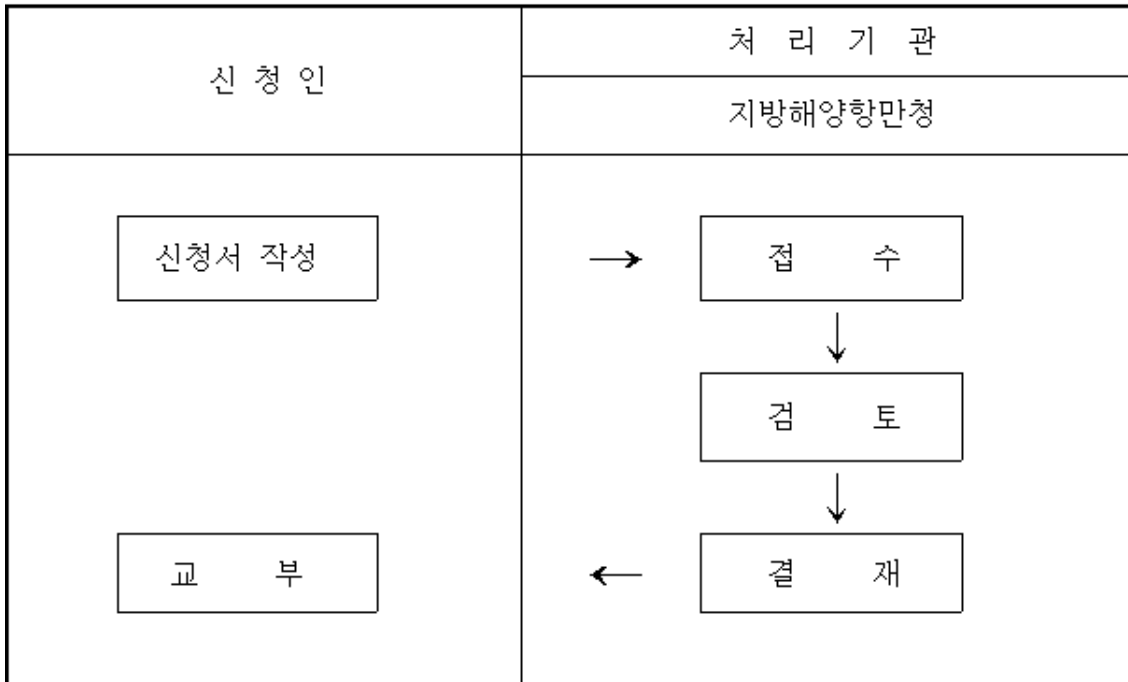
나. 훼손된 경우 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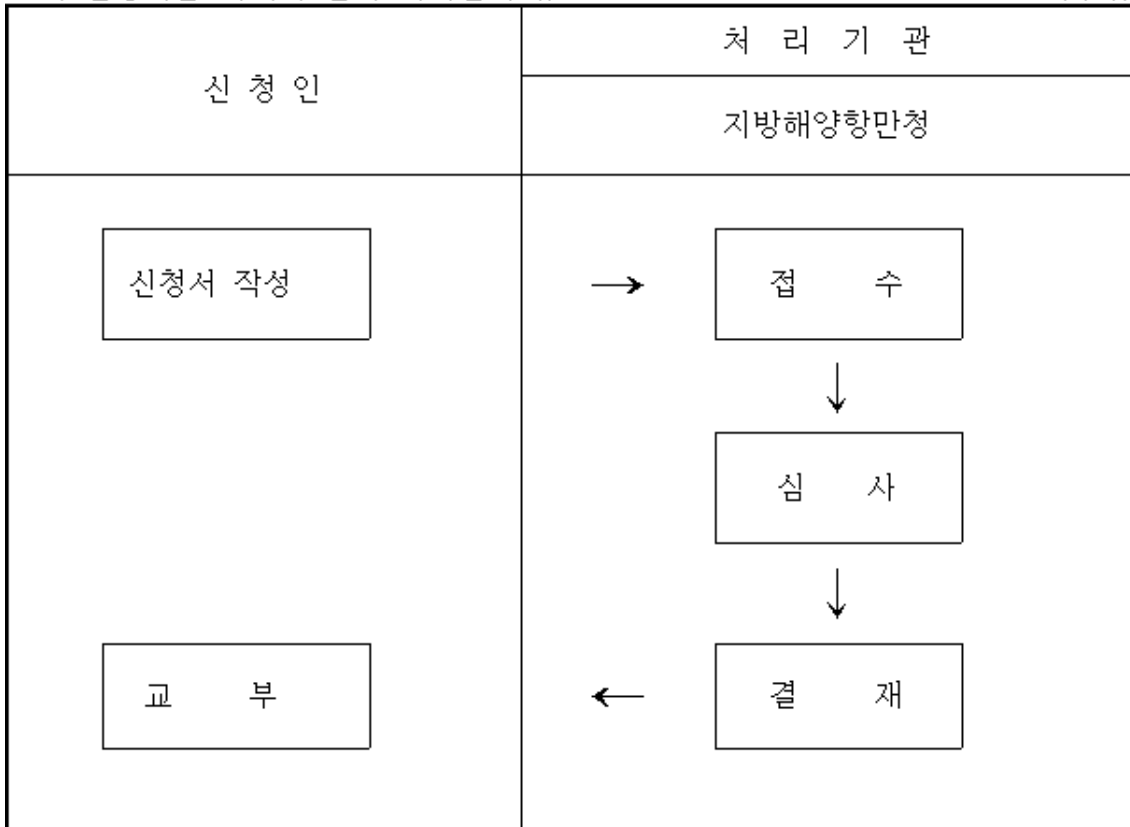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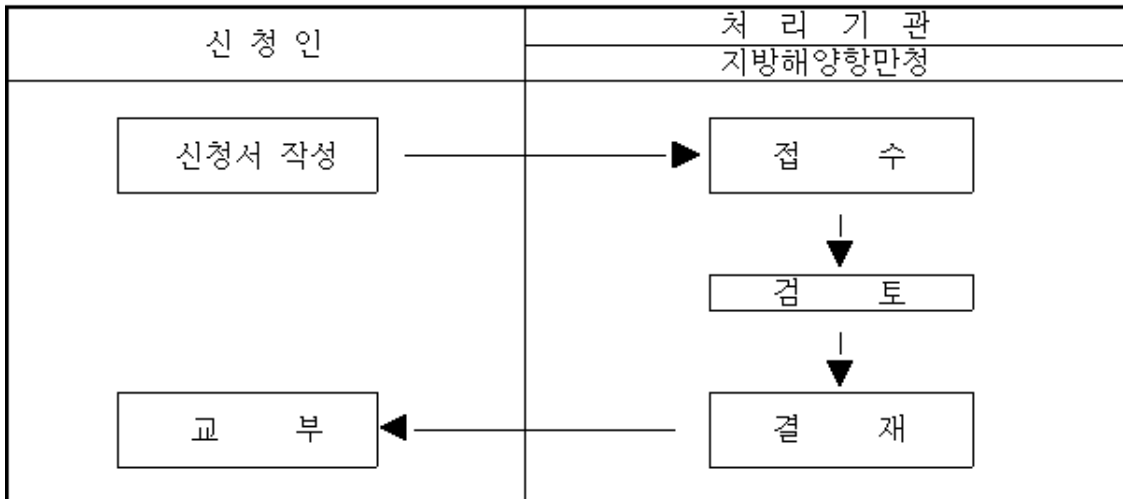
(뒤쪽)



(뒤쪽)

| | | |
|------|---|------------------------------|
| 구비서류 | <p>제출서류</p> <p>1. 발급신청의 경우</p> <p>가.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사본 ※ 신청인이 앞쪽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p> <p>나. 「선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증서 사본</p> <p>다.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p> <p>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p> <p>마. 과거의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본(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p> <p>2. 재교부신청의 경우</p> <p>가.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p> <p>1) 선박이력기록부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p> <p>2) 선박이력기록부가 훼손된 경우 훼손된 선박이력기록부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p> <p>나. 기재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p> <p>1) 선박이력기록부 사본</p> <p>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p> | <p>확인 사항</p> <p>선박 국적 증서</p>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8.3.14>

(제1쪽)

| 선박이력기록부 | |
|---|--|
| Continuous Synopsis Record(CSR) Document Number _____ for the Ship with IMO Number: IMO | |
| 기재사항(Information) | |
| 1 | 적용일자 This document applies from (date): |
| 2 | 기국 Flag State : |
| 3 | 기국등록일 Date of registration with the State indicated in 2: |
| 4 | 선박명 Name of ship: |
| 5 | 선적항 Port of registration: |
| 6 | 선박회사 명칭/주소 Name of current registered owner(s): Registered address(es): |
| 7 | 선박회사 식별번호 Registered owner identification number: |
| 8 | 나용선인 경우 나용선주 명칭/주소 If applicable, name of current registered bareboat charterer(s): Registered address(es): |
| 9 | 안전관리회사 명칭/본사주소/주사업장소 Name of Company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Registered address(es): Address(es) of its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
| 10 |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
| 11 | 선급명 Name of all classification societies with which the ship is classed: |
| 12 | DOC발급기관명/발급기관과 다른 경우 심사기관명 Administration/Government/Recognized Organization which issued Document of Compliance: Body which carried out audit (if different): |
| 13 | SMC발급기관명/발급기관과 다른 경우 심사기관명 Administration/Government/Recognized Organization which issued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Body which carried out audit (if different): |
| 14 | ISSC발급기관명/발급기관과 다른 경우 심사기관명 Administration/Government/Recognized Organization which issued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 Body which carried out audit (if different): |
| 15 | 말소등록일 Date on which the ship ceased to be registered with the State indicated in 2: |
| 16 | 비고 (insert relevant information as appropriate) |
| 이 증서는 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발급기관/ Issued by the Administration of: 발급장소 및 발급일/ Place and date of issue: 인가자서명/ Signature of authorized person: 인가자명/ Name of authorized person: 본선 수령일 및 수령자 서명/ This document was received by the ship and attached to the ship's CSR file on the following date: _____ Signature: _____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선박이력기록부의 개정서식

(제2쪽)

Amendments to the Continuous Synopsis Record(CSR) Document
Number _____ for the Ship with IMO Number: IMO _____

| 기재사항(Information) | |
|-------------------|---|
| 1 | 적용일자 This document applies from (date): |
| 2 | 기국 Flag State: |
| 3 | 기국등록일 Date of registration with the State indicated in 2: |
| 4 | 선박명 Name of ship: |
| 5 | 선적항 Port of registration: |
| 6 | 선박회사 명칭/주소 Name of current registered owner(s): Registered address(es): |
| 7 | 선박회사 식별번호 Registered owner identification number: |
| 8 | 나용선인 경우 나용선주 명칭/주소 If applicable, name of current registered bareboat charterer(s): Registered address(es): |
| 9 | 안전관리회사 명칭/본사주소/주사업장소 Name of Company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Registered address(es): Address(es) of its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
| 10 |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
| 11 | 선급명 Name of all classification societies with which the ship is classed: |
| 12 | DOC발급기관명/발급기관과 다른 경우 심사기관명 Administration/Government/Recognized Organization which issued Document of Compliance: Body which carried out audit (if different): |
| 13 | SMC발급기관명/발급기관과 다른 경우 심사기관명 Administration/Government/Recognized Organization which issued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Body which carried out audit (if different): |
| 14 | ISSC발급기관명/발급기관과 다른 경우 심사기관명 Administration/Government/Recognized Organization which issued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 Body which carried out audit (if different): |
| 15 | 말소등록일 Date on which the ship ceased to be registered with the State indicated in 2: |
| 16 | Remarks(비고) (insert relevant information as appropriate) |

이 증서는 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발급자/Issued by the Company or Master: _____

발급일자/Date of issue: _____

인가자 서명/Signature of authorized person: _____

인가자명/Name of authorized person: _____

(제4쪽)

기재 시 참고사항

1. 이 서식 중 제1쪽의 기재사항은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외의 자가 수정·삭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박이력기록부 기재내용은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2. 국제항해선박의 선장이나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 기재사항 중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박이력기록부를 재교부받을 때까지 이 서식 제2쪽의 기재사항(Information) 난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그 국제항해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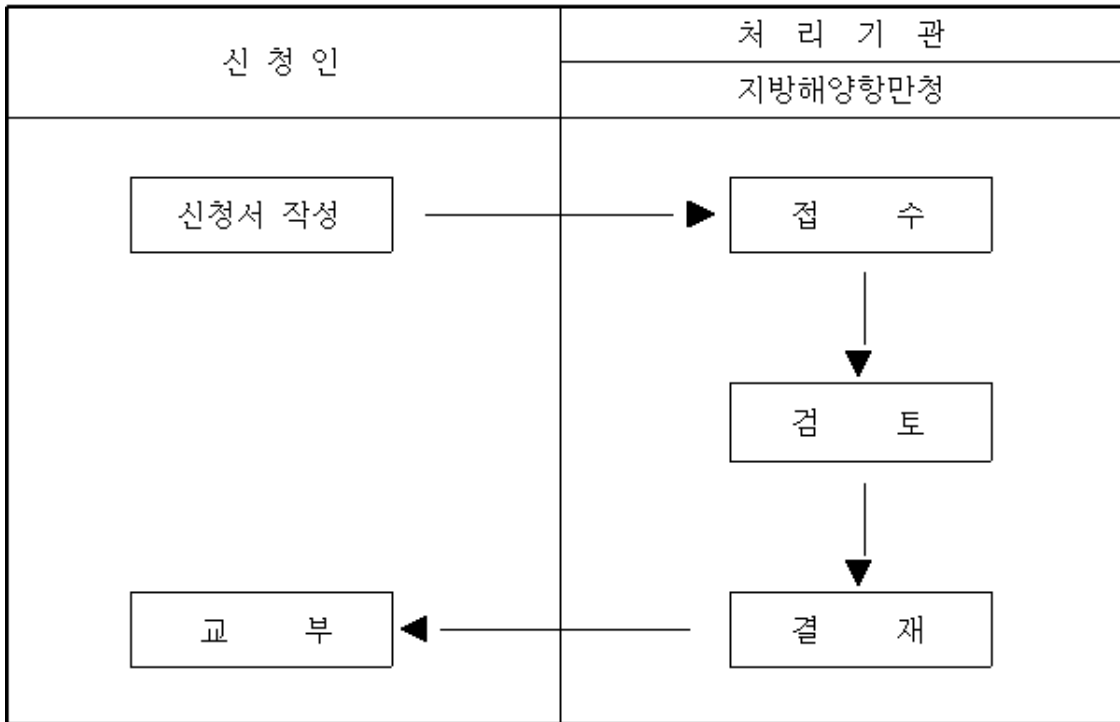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4.11>

(앞쪽)

| 이의신청서 | | | 처리기간 |
|---|-------------------------|---|----------|
| | | | 7일 |
| 신청인 | ① 회사명 | | ② 대표자 성명 |
| | ③ 주 소 | | |
| | ④전화번호 | | ⑤ 팩스번호 |
| 선박 | ⑥ 선 명 | | ⑦ 총톤수 |
| | ⑧ 선박식별번호 (IMO번호) | | ⑨ 용 도 |
| | ⑩ 회사식별번호 (있는 경우만 해당) | | ⑪ 선적항 |
| ⑫ 항만당국의 처분내용 | | | |
| ⑬ 이의신청 사유 |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제9항 및 제1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지방해양항만청장 확인사항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1부 |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 없 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8.3.14>

(앞쪽)

|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 | | | | |
|---|----------------------|--|----------|--|
| 신청인 | ① 회사명 | | ② 대표자 성명 | |
| | ③ 주소 | | | |
| 선박 | ④ 선박명 | | ⑤ 총톤수 | |
| | ⑥ 선박식별번호 (IMO 번호) | | ⑦ 선적항 | |
| 이의신청내용 | ⑧ 신청일시 | | ⑨ 신청인 | |
| | ⑩ 신청사유 | | | |
| ⑪ 이의신청 결과 | | | | |
| <p>「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0항 및 제1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해양항만청장(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8.3.14>

| 재심사결과 통보서 | | | | |
|--|---------------------|--|---------|--|
| 신청인 | ① 회사명 | | ② 대표자성명 | |
| | ③ 주소 | | | |
| 선박 | ④ 선박명 | | ⑤ 총톤수 | |
| | ⑥ 선박식별번호 (IMO번호) | | ⑦ 선적항 | |
| 재심사 내용 | ⑩ 재심사 사항 | | | |
| | ⑩ 심사 결과 | | | |
| <p>「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재심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 방 해 양 항 만 청 장 (인) 귀하</p>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8.3.14>

| | | | | | |
|--|-------------------|-------------|---------------|----------------|--------------------|
| □ 지 정 통 보 서 □ 변경지정 항만시설보안책임자 | | | | | |
| 항만시설 소유자 | ① 항만시설의 명칭(상호) | | ④ 전화번호 | | |
| | ② 대표자성명 | | ⑤ 팩스번호 | | |
| | ③ 주 소 | | ⑥ 홈페이지 | | |
| ⑦ 항만시설 보안책임자 | | | | | ⑧ 업무대행자 (보안담당자) |
| 대 상 항만시설 | 부 서 직 위 | 성 명 생년월일 | 전 화번호 팩스번호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 성 명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p>「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 의 사람을 위 항만시설의 보안책임자 로 지정(변경지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통 보 인 (서명 또는 인) [인 () -]</p> <p style="text-align: center;">지 방 해 양 항 만 청 장 귀 하</p> | | | | | |
| 구비서류: 별표 2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8.3.14>

(앞쪽)

| | | | | |
|---|-----------|--------------------|--------------------|--|
| 항만시설보안계획서 <input type="checkbox"/> 승 인 <input type="checkbox"/> 변경승인 | | 처리기간 | | |
| | | 14일 (변경의 경우 7일) | | |
| 항만시설 소유자 | ① 항만시설 명칭 | | ② 대표자 성명 | |
| | ③ 주 소 | | | |
| | ④ 전화번호 | | ⑤ 팩스번호 | |
| 대상 항만시설 | | | | |
| ⑥ 항만시설 명 | ⑦ 주 소 지 | ⑧ 항만시설의 종류 | ⑨ 항만시설의 규모 및 수량 | |
| | | | | |
| | | | | |
| | | | | |
| ⑩ 변경승인의 경우 변경내용·사유 | |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지 방 해 양 항 만 청 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1. 항만시설보안계획서 2부 2. 변경사유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수수료 별표 7에 따름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8.3.14>

(제1쪽)

확인서 번호
Statement No.:
Korea

대한민국
Republic of

항만시설적합확인서 STATEMENT OF COMPLIANCE OF A PORT FACILITY

항만시설 이름(Name of the Port Facility):
항만시설 주소(Address of the Port Facility):

이 적합확인서는 위 항만시설이 협약 XI-2장 및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 A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고 승인된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아래에 표시된 선박의 이용을 위하여 이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승인되었습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compliance of this port facility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XI-2 and part A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ISPS Code) has been verified and that this port facility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ed Port Facility Security Plan. This plan has been approved for the following:

- 여객선 (Passenger ship)
- 고속여객선 (Passenger high speed craft)
- 고속화물선 (Cargo high speed craft)
- 산물선 (Bulk carrier)
- 유조선 (Oil tanker)
- 화학제품운반선 (Chemical tanker)
- 가스운반선 (Gas carrier)
- 이동식 해상 구조물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 그 밖의 화물선 (Cargo ship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above)

이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뒷면에 기재된 중간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_____까지 유효합니다.

This Statement of Compliance i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verifications(as indicated overleaf)

증서의 발행장소(Issued at):

발행일자(Date of issue):

청장 서명(Signature): _____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fice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보안심사의 표기
(ENDORSEMENT OF VERIFICATION)

대한민국정부는 이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아래와 같이 중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that the validity of this Statement of Compliance is subject to annual verifications.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 B편 제16.62.4항에 따라 시행된 심사에서 이 항만시설이 협약 XI-2 및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A편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during a verificatio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B/16.62.4 of the ISPS Code, the port facility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chapter XI-2 of the Convention and Part A of the ISPS Code.

첫번째 중간보안심사
(1st Annual Verification)

심사자 서명 (Signed)

심사장소 (Place)

합격일자 (Date)

_____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fice

두번째 중간보안심사
(2nd Annual Verification)

심사자 서명 (Signed)

심사장소 (Place)

합격일자 (Date)

_____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fice

세번째 중간보안심사
(3rd Annual Verification)

심사자 서명 (Signed)

심사장소 (Place)

합격일자 (Date)

_____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fice

네번째 중간보안심사
(4th Annual Verification)

심사자 서명 (Signed)

심사장소 (Place)

합격일자 (Date)

_____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fice

특별선박보안심사
(Additional Verification)

심사자 서명 (Signed)

심사장소 (Place)

합격일자 (Date)

_____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fice

(제3쪽)

이 확인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The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28.2 of Act for the Security of International Ships and of Port Facilities of Korea,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

심사자 서명(Signed)

장소(Place)

일자(Date)

_____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fice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8.3.14>

(앞쪽)

| | | | | |
|--|----------|---------|---------|----------|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2일 |
| 항만시설 소유자 | ① 사업장명 | | | ② 대표자 성명 |
| | ③ 주 소 | | | |
| | ④ 전화번호 | | | ⑤ 팩스번호 |
| ⑥ 연장받으려는 항 만시설적합확인서 | 확인서 번호 | | | |
| | 확인서 발행일자 | | | |
|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 | |
| ⑦ 연장 신청 기간 |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⑧ 연장 사유 | | | | |
| <p>「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인 () -]</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p> | | | | |
| 구비서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 | | | | 수수료 |
| | | |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표지)

관리번호: _____

항만시설보안기록부
(법 제30조제1항 관련)

1. 항만시설의 명칭:

2. 항만시설소유자:

3. 작성기간: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4.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부서 _____

직위 _____

성명 _____(서명)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Declaration of Security (보안합의서)

Name of Ship(선박명): _____

Port of Registry(선적항): _____

IMO Number(IMO번호): _____

Name of Port Facility(항만시설명): _____

이 보안합의서는 아래의 보안등급 하에서 _____ 부터 _____ 까지 다음의 활동에 대하여 유효합니다.

This Declaration of Security is valid from _____ until _____ for the following activities _____.

Security Levels(보안등급): _____

Ship Security Level(선박보안등급): _____

Port Facility Security Level(항만보안등급): _____

선박 및 항만시설은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요건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 및 책임에 대하여 상호 동의합니다.

The port facility and ship agree to the following security measures and responsibiliti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Part A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

선박보안책임자 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아래 내용 중 해당 활동사항에 대하여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The affixing of the initials of the SSO or PFSO under these columns indicates that the activity will be done, in accordance with relevant approved plan, by _____.

| Activity(보안활동) | The port facility: (항만시설) | The ship: (선박) |
|---|------------------------------|-------------------|
| 모든 보안활동 업무에 대한 시행의 확인 Ensuring the performance of all security duties | | |
| 제한구역에 대해 접근을 허용 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시 Monitoring restricted areas to ensure that only authorized personnel have access | | |
| 항만시설에 대한 접근 통제 Controlling access to the port facility | | |
| 선박에 대한 접근 통제 Controlling access to the ship | | |
| 선박주변지역을 포함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감시 Monitoring of the port facility, including berthing areas and areas surrounding the ship | | |
| 선박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선박에 대한 감시 Monitoring of the ship, including berthing areas and areas surrounding the ship | | |
| 화물의 취급 Handling of cargo | | |
| 선용품의 인도 Delivery of ship's stores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
|---|--|--|
| 위탁 수화물의 취급 Handling unaccompanied baggage | | |
| 사람과 그들 물품의 탑승 통제 Controlling the embarkation of persons and their effects | | |
| 항만시설과 선박 간 보안통신이 즉시 사용 가능한 것에 대한 보증 Ensuring that security communication is readily available between the ship and port facility | | |

이 합의서의 서명자들은 해당 선박 및 해당 항만에 대한 보안조치 및 계획이 특정활동 동안 각자의 승인계획 또는 동의한 특정 합의사항에 이미 명기되어 첨부된 부속서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서 시행될 협약 제11-2장 및 코드 A편의 규정에 이의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The signatories to this agreement certify that security measures and arrangements for both the port facility and the ship during the specified activities meet the provisions of chapter XI-2 and Part A of Code that wi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already stipulated in their approved plan or the specific arrangements agreed to and set out in the attached annex.

Dated: _____ on the

| | |
|--|-------------------|
| Signed for and on behalf of (대리 서명) | |
| the port facility(항만시설): | the ship(선박): |
| Name and title of person who signed (서명자 직책 및 이름) | |
| Name(이름): | Name(이름): |
| Title(직책): | Title(직책): |
| Contact Details (구체적인 연락방법) (전화번호 혹은 무선주파수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술) | |
| for the port facility(항만시설): | for the ship(선박): |

Port Facility(항만시설):

Port Facility Security Officer(항만시설보안책임자):

Master(선장): _____

Ship Security Officer(선박보안책임자):

Company(회사): _____

Company Security Officer(총괄보안책임자):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3.24>

|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 | |
|---|--|
| ① 기 관 명 | |
| ② 대 표 자 | |
| ③ 소 재 지 | |
| ④ 업무범위 | |
| <p>「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안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p>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3.24>

(앞쪽)

|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 처리기간 | |
|---|---|---------------------------|-----|
| | | 30일 | |
| 신청인 | ① 명 칭(상호) | | |
| | ② 대표자의 성명 | | |
| | ③ 주 소 | | |
| <p>「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p>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수산부장관 귀하</p> | | | |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해양수산부장관 확인사항 | 수수료 |
| | 1.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빙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영 제14조의 보안교육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안교육 시행계획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음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3.24>

| | |
|---|--|
| 제 호 보안교육기관 지정서 | |
| ① 교육기관의 명칭 | |
| ② 교육기관 소재지 | |
| <p>「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해양수산부장관 (인)</p>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